

2017년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취업연계교육지원 사업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2017년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취업연계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4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과 이전 역외 기업들에게 필요한 신규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교육지원으로 고용기업과 구직자들의 질적·양적 미스 매칭 해소
- 기업이 필요한 인력 채용 후 도제식 교육 훈련으로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재 양성

2. 사업 기간 : 2017. 4 ~ 2017. 11

3. 지원 사항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 11. 30(목)까지
- (지원 규모) : 00명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 (지원 내용) : 고용 인원에 대한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지원
- (지원 내역)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 1인당, 최대 6개월까지, 총 6,000,000원(월 1,000,000원) 한도 지원
 - ▷ 지원금 한도 및 기업 자체 부담금
 - 지원금 한도 : 월 급여의 70% 이내(월 1,000,000원 한도)
 - 기업 자체 부담금 : 월 급여의 30% 이상
- (의무사항) : 교육훈련 완료 후, 지원받은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훈련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4.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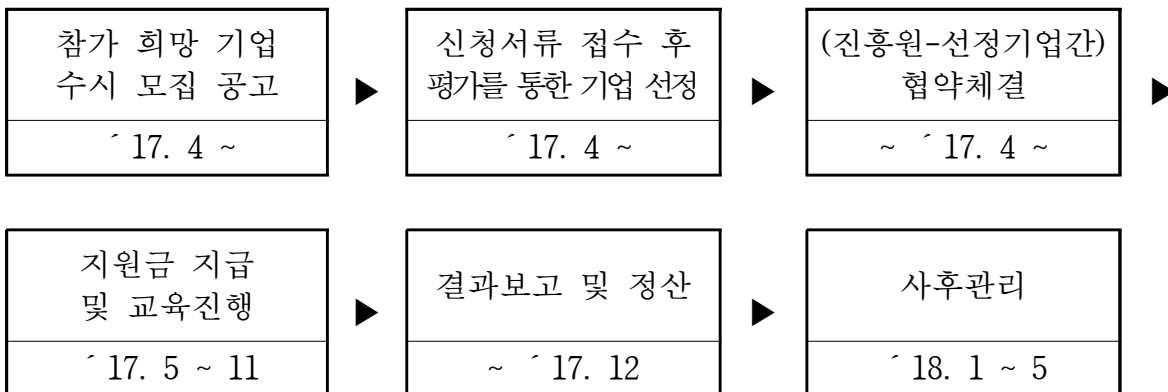
-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및 지역 이전(예정) 역외 기업
-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지역인 문화콘텐츠 기업
 - ※ 문화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고시 분야
- 참가대상자 : 신규채용 인력(콘텐츠 분야 경력 3년 미만)
- 참가자는 해당 기업에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자

※ 신청 제외 기업

- 본 사업에 참여 예정인 동일한 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사업 대행 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 체납 등)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 기타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 기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지원 및 추진 절차

- 모집 기간 : '17년 4월부터 수시 참가 희망기업 모집
- 선정 방법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평가점수 70점 이상 선정)
- 협약 체결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 추진 절차



- 사업 수행관리
 - ▷ 지원금 선 집행, 교육 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및 검토
 - ▷ 사업 기간 중 기업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중간 점검 실시 (학습 근로자 대면 상담 포함)

6. 선정기준(안)

○ 서면평가

**2017년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취업연계교육지원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심사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등급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I	기업의 프로그램 운영 여건 (50점)	1. CEO의 자체 인력 양성 의지	10	8	6	4	2	
		2. 기업의 규모 및 환경 / 여건의 적절성	10	8	6	4	2	
		3. 독자적 기술력 보유	10	8	6	4	2	
		4. 근로조건	10	8	6	4	2	
		5. 유사 사업 참여 경험	10	8	6	4	2	
II	프로그램 요건 (50점)	1. 인력양성 목표의 적절성	10	8	6	4	2	
		2. 학습 근로자 수의 적절성	10	8	6	4	2	
		3. 학습 근로기간 중 임금 지급 수준의 적절성	10	8	6	4	2	
		4. 훈련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10	8	6	4	2	
		5. OJT 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합 계								

7. 참여 기업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작성내용	부 수	제출방식	비 고	
참여 기업 신청서	① 기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	원본 1부	진흥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인감 날인하여 제출 ※담당자 확인 연락 필수	신청 기업에 한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④ 이행확약서 1부				
	⑤ 훈련근로계약서 1부				
	※ 채용 예정기업은 협약 체결 시 ⑤번 제출				
협약 체결시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1부	별도 제출 (방문제출)	선정 기업에 한함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계 사용 시)				
	④ 위임장(필요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교육훈련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⑦ 학습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⑧ 직전 2개월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협약 체결후	구 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협약 기업에 한함
	지원금이행 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212일 (2018년6월30일까지)	
	※ 결과보고 및 정산 시, 정산보고서 및 추가 증빙 자료				
사후 관리	① 학습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② 학습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완료 기업에 한함

○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busanit.or.kr)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담당자 확인 연락 필수)
접수 및 문의처	[방문접수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 15층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게임사업부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우편접수처]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복합플렉스 921호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게임사업부 취업연계교육지원사업 담당자앞 ☎ 051-626-2538, E-mail : lsa@busanit.or.kr

8.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공고 및 사업 안내서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 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지원금 부당사용, 기타 해약 사유) 시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수행 기관명, 사유, 제재 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학습 근로자 동일인 등)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문화산업 및 콘텐츠 산업 기준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시행2014.11.29.] [법률 제1268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10., 2011.5.25., 2014.1.2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료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